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4
------	-----

2023.05.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종배 의원(찬성자 19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4.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배 의원)

1. 제안이유

-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 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에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책무, 관광지원기본계획, 민간참여의 촉진, 예산편성,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관광약자’ 라는 용어가 ‘관광취약계층’ 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

- 관광약자·관광취약계층 용어에 대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제314회(2022.9.22.) 임시회에서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이라는 용어가 신설되었으며, 제316회 임시회(2023.2.9.)에서 ‘관광취약계층’ 이라는 용어에 ‘관광약자’ 를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령과의 용어체계 혼선을 이유로 미반영 되었음.

〈관광약자·관광취약계층 용어 법제화 현황〉

제안 내용	일시	발의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이라는 용어 신설 	제314회 임시회(2022.9.2.)	아이수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취약계층 용어에 관광약자를 포함 → 법령과의 용어 체계 혼선(미반영) 	제316회 임시회(2023.2.9.)	박성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취약계층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관광약자로 조례 제명 등을 수정 	제318회 임시회(2023.4.)	이종배 의원

- 이에 동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관광약자’로 제명 및 목적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도 ‘관광약자’를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2022.10.17.개정)하여 관광취약계층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관광취약계층’보다 광의의 개념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로 제명과 일괄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또한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관광약자’로 조례 제명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1)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을 준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재적위원 7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기덕,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환희,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정희,
,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 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책무, 관광지원기본계획, 민간참여의 촉진, 예산편성,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중 “관광취약계층”를 각각 “관광약자”로 하고

제4조제1항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각각 “관광약자를”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관광약자를”로 한다.

제8조 중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약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
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
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
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
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
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생 략)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

--
2. 관광약자를 -----

3. 관광약자를 -----

--
4. 관광약자를 -----

5. 관광약자를 -----

6. ----- 관광약자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
관광약자를 -----

-----.

제7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
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
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
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
다.

제7조(예산편성) ----- 관광약자
를 -----

제8조(표창) ----- 관광약자-----

